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23

발의연월일: 2025. 2. 10.

발 의 자:김현정·양문석·김문수

김 윤ㆍ채현일ㆍ이강일

윤준병 · 강준현 · 안호영

이정문 • 박정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사실상 동일 영업을 유지하면서 조 직형태만을 변경하는 경우 신규 인가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등 록 특례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신규등록과 동일한 요건 및 절 차가 적용되어 심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한편,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한 후 부족분을 채워 1주 단위의 완전한 주식인 온주(穩株, Complete Share)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예탁 결제원의 주식 예탁업무는 온주를 기본단위로 하여 예탁자의 자기소 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예탁자 계좌부에 해외주식의 분할기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한시적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통해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구분 예탁의무의 예외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음.

이에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해외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시 규제샌드박스 내용인 구분예탁 규제의 예외 를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 21조의2 신설 및 제309조제3항).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1장제2절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등록에 관한 특례)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 제117조의4에 따른 등록 또는 제249조의3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각각 제18조, 제117조의4 또는 제249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제18조제2항제 3호·제5호, 제117조의4제2항제3호·제4호·제6호 또는 제249조의3제 제2항제3호·제5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3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외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외화증권이 분할되어 거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탁자계좌부를 작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u> <신 설></u> | 제21조의2(외국 금융투자업자의 | |
| |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등록에 | |
| | 관한 특례) 제18조에 따른 금 | |
| | 융투자업등록, 제117조의4에 따 | |
| | 른 등록 또는 제249조의3에 따 | |
| | 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 |
| | 을 한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 | |
| | <u>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대통</u> | |
| | 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 | |
| | 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 | |
| |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 |
| | 양수하는 자가 각각 제18조, 제 | |
| | 117조의4 또는 제249조의3에 | |
| |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 | |
| |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
| | 에 따라 각각 제18조제2항제3 | |
| | 호·제5호, 제117조의4제2항제3 | |
| | 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249 | |
| | 조의3제2항제3호·제5호의 요 | |
| | 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 |
| | <u>것으로 본다.</u> | |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 ① · ② (생 략)
-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 를 작성·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④·⑤ (생 략)

|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 예탁 | 등) |
|---------------|----|----|
|---------------|----|----|

- ①·② (현행과 같음)
- (3) -----

다만, 해외 증권시장(증권시장 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 되는 외화증권이 분할되어 거 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탁자의 자 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탁자계좌

- 1. ~ 3.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